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191호
- 다. 제출일자 : 2019. 10. 16.
- 라. 회부일자 : 2019. 10. 22.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 향상과 생활 편의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의 동의 및 보고)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 사전에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수탁법인 :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교통연수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10
- 운영일자 : 2017.06.01.~2020.02.29.
- 인력현황 : 18명(정규직 13명, 계약직 5명)
- 시설규모 : 면적 대지 1,650.1㎡, 건물 5,222.67㎡, 지상5층, 지하1층

나. 민간위탁(재계약) 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4항(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 3년(2020.03.01.~2023.02.28.)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운영
 -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강 및 휴식 등 편의시설 운영 등
- 소요예산 : 955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나. 기타사항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만료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1)에 의해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과의 재계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시가 관련 법²⁾³⁾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 설치한 이후 2001년 7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참고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치 : 관악구 남현1길 38-10(남현동 소재)- 규 모 : 대지 1,650.1㎡, 건물 5,222㎡(지하 1층, 지상 5층)- 시설내용 : 강당, 강의실, 사우나실, 헬스클럽, 식당, 어학실 등- 수탁기간 : 2017.06.01.~2020.02.29.- 위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7.19~'04.08.31 : (재)좋은친구산업 복지재단· '04.9.01~'07.08.31 : (사)전택노련복지협회 컨소시엄· '07.9.01~'10.08.31 : (사)전택노련복지협회 컨소시엄(재위탁)· '10.9.01~'13.11.30 : (사)전택노련복지협회 컨소시엄(재위탁)· '13.12.01~'17.05.31 : (사)전국택시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 '17.6.1~'20.02.29 :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 |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민간위탁 대상 여부 관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4)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현행 조례 제10조5)에서는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및 운수종사자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등을 위해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의 교양 관련 프로그램, 건강·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는 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운영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민간위탁 재계약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의회 동의 관련

-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재계약은⁶⁾ ‘위탁기간 만료 후 기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재계약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⁷⁾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는 '99년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체결시 의회 동의 여부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고⁸⁾, 현재는 조례 제4조의3⁹⁾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음과 같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조직담당관-11983(2019.9.19.)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적정**

택시물류과-38701(2019.10.1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적격**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연혁(재계약·재위탁시 의회 동의 여부)

구 분	조례 개정일					
	' 11.12.29 이전	' 11.12.29	' 12.12.31	' 16.1.7	' 17.7.13	' 19.9.26
민간위탁사업의 재계약·재위탁시 의회 동의 여부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음	의회 동의 必	의회 동의를 보고로 같음	보고로 같음하되 매 4회차 마다 의회 동의 받아야 함	보고로 같음하되 의회 동의 7년 경과 후 의회 동의 받아야 함	보고로 같음하되 의회 동의 6년 경과 후 의회 동의 받아야 함
수탁기관	(재)좋은친구산업 복지재단 ('01.7.19~' 04.08.31) (사)전택노련복지협회 컨소시엄 ('07.9.01~' 13.11.30)		(사)전국택시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 ('13.12.01~'17.05.31)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 ('17.6.1~'20.02.29)	

9)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체결시 의회 동의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반영('11.12.29)되고, 재위탁 계약이 체결('13.12.01)된지 6년 경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금번 재계약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현재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현행 수탁자와 재계약 필요성 여부 관련

- 서울시에서 '19년 6월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¹⁰⁾ 교육원은 공동사무평가(사업인프라, 사업활동), 개별사무평가(사업성과, 지도점검이행노력) 및 사용자만족도평가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84.93점을 받은 바 있음
- 금번 28개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평균점수(81.61점)를 감안할 때 교육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반적인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계약에 대한 결격사유는 크게 보이지 않음
- 다만,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재계약 및 이에 따른 시의회 동의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동의 절차와 예산안 편성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었던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임

10) 2019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조직담당관-2844, 2019.6.27.)

- 기간 : '19. 2월~19. 6월 (* 결과보고회 : '19. 6. 19.) / 대상 :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등 28개 위탁사무
- 방법 :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평가 / 평균점수 : **81.61점** (* '17년 평균 75.20점, '18년 평균 80.51점)